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방안

본회 국제통상팀

본고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흥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된 '전자산업 통상정책 포럼'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근호 공인회계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편집자)

1.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국내외 환경의 변화

□ 최근 국내외 환경의 변화

WTO 체제 후 국내시장도 국내외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으며,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국면에 있다. 이로 인해,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수입으로부터 국내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산업피해구제제도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금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이다.

동 제도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거의 유일

한 국내산업보호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종류는 크게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제도가, 후자에는 서비스세이프가드 제도가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상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 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추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계관세는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범

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나 발동이 여의치 않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 한다든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2. 각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이용 추세

UR타결 이후 WTO 체제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이 반덤핑제도를 자국 법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 전통사용국

80년대까지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

여 왔으나, 90년 들어 신흥사용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 원인은 이미 자국산업 전반에 걸쳐 동 제도를 통한 구제조치가 상당부분 되어 있고 한국, 일본 등이 현지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반덤핑공세에 대응하는 등 수출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신흥사용국

90년대들어 멕시코, 남아공화국, 인도, 한국은 활발히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97년부터는 중국이 반덤핑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8건의 반덤핑조사를 하였으며, 이중 한국과 관련된 조사는 5건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도 WTO출범 이후 최초의 Case를 한국산 PSF로 하는 등 신규 사용국들이 들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87년부터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내에 "산업피해구제상담실"을 운영하였다.

무역협회에서는 96년 5월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제소자료 작성 등에 따른 변호사 경비를 총 수입료의 1/2의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4. 각 단계별 제소업체의 대응 방안

가. 신청여부 결정

□ 신청자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산업을 관장 하는 주무부장관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업체들 또는 이들의 협회가 신청을 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그러한 국내생산자중 당해물품의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생산자들을 말하며,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개인이다.

이러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사전에 무역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한 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입물품의 범위를 확정

조사대상물품의 범위확정시 되도록 포괄적 정의로 유사품목간

우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수출국가의 확정

되도록 많은 국가를 지명하여 소의 이익이 반감되거나 확정조치 후 우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나. 대리인의 선임

전문성을 확보한 경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다.

다. 자료수집

(1) 산업피해의 존재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산업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로 과거 3-4년간의 수입품의 물량추이 및 가격추이이다.

이로 인한 국내업체의 생산, 출하, 경영지표 등의 악화, 투자감소, 재고증가, 고용감소 등으로 대변되는 피해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피해자료 중 제소시 중요한 것은 수입통계 및 국내시장통계 등이고, 기타 국내업체의 업체별 생산, 출하, 경영지표 등의 자료는 신청인들의 자료이므로 입수가 용이하다.

다만, 제소대상물품에 관한 부분손익 등 재계산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단기간 수입 급증으로 향후피해가 우려되며, 덤핑물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산업설립이 지연된다.

(2) 덤핑의 존재

수출국가내의 정상가격보다 우

리나라에 수입되는 가격이 낮으면 덤핑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출기업은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덤핑사실이 발생한다. 또한, 외국의 자료이므로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3) 산업피해와 인과관계의 존재
수입물량, 수입가격과 국내산업 피해와의 논리적인 관련성이 강조된다.

라. 상기 각 요건별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소

신청서초안을 작성하여 무역위원회 담당조사관과 상담한다. (수정 및 보완사항)

마. 신청서제출

신청서 제출 후 약 2개월 이내에 무역위에서는 조사개시여부 검토하나,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조사개시 가능하다.

바. 답변서제출

조사개시 후 무역위에서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하는 바 질문내용은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답변서는 신청서내용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피해논리를 좀 더 개발하는 내용이다.

신청서 작성시 간과하였거나 실수가 있는 부분은 답변서를 통하여 보완한다. 답변서는 추후 현지실사검증대상이다.

사. 의견서제출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판정과 관련한 국내업체의 주장을 의견서로 요약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판정에 긍정적 영향을 유도한다.

아. 현지실사검증

예비판정 후 산업피해과 주관 실사검증시 제출된 답변자료가 회사보관 자료와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 공청회준비 및 참가

수출자와 국내업체 등 관련당사자들이 무역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므로 발언요지 및 상호주장에 대한 반박논거 개발 등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차. 최종의견서제출

주로 공청회시 제기된 최종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을 주장한다.

5. 결어

가. 덤핑방지관세부과의 효과

덤핑을 방지하면 값싼 외국 상품이 수입되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독점하여 결국 국내산업의 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고용기회도 상실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부과대상품목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

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당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이 증대되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러한 구제조치는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피제조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국내업체는 피해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시점

최종판정에 따른 확정관세 부과전이라도 조사기간 중 계속되는 덤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에도 덤핑수입이 계속되어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산업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판정전이라도 당해 물품과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관세 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잠정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확정조치는 약 3년 내지 5년의 기간동안 부과되고, 조치종료시 종료재심을 통하여 부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